폭염 그리고 기후변화, 일하는 사람의 건강을 위협하다

김기선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최근 2019년 8월 1일 고용노동부는 「35℃ 폭염 시 작업중지 권고」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고용노동부가 2019년 6월 4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배포하였던 2019년 『폭염대비 노동자 건강보호대책』의 『열사병 예방 3개 기본수칙 이행지침』의 폭염 위험단계별 대응요령 가운데, 폭염 시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에 대해 심각단계인 38℃에서 작업중지를 권고토록 하던 것을 경계단계인 35℃ 이상으로 변경하였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올해도 폭염이 기승이다. 이제 여름철 폭염은 일상이 되어버렸다. 폭염주의보나 폭염경보가 발령되었다는 행정안전부의 문자메시지를 받거나 폭염으로 인한 열 질환이나 사망 뉴스를 접하게 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우리만 그런 것도 아니다. 전 세계가 기후온난화로 인한 폭염을 경험하고 있다. 올해 프랑스, 벨기에 등 서유럽은 40℃가 훌쩍 넘는 역사상 유례없는 폭염에 신음하였다.

이번 호 국제노동브리프의 기획특집에서는 폭염과 일하는 사람의 건강문제를 다루어 보고자 하였다. 미국, 영국, 독일에서 폭염이 일하는 사람의 건강에 어떠한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는지, 이들 나라에서는 폭염으로 인한 일하는 사람의 건강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어떠한 조치 등을 취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폭염과 같은 고온하에서 일하는 것이 일하는 사람의 건강에 위협이 된다는 점은 두말할 나

위가 없다. 특히 뙤약볕이 내리쬐는 폭염하에서 야외에서 일을 하는 경우는 폭염으로 인한 건강침해가 우려되는 가장 직접적인 경우라 할 수 있다. 폭염 등으로 인한 고온하에서 일을 하는 것이 일하는 사람의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미국의 연구결과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따르면, 폭염 등 고온은 모든 일하는 사람의 건강에 부정적이지만, 특히 취업 초기에 있는 업무경험이 많지 않은 신입 근로자, 생리학적 특성에 따라 열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고연령대의 근로자, 소득이나 신분상의 불안정성으로 폭염 등 고온 환경하에서 일하는 것을 감내해야 할 수밖에 없는 취약근로자 등이 폭염으로 인한 건강침해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다.

폭염 등 고온 환경하에서 일하는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각국의 대응조치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연방법률 차원에서 열 스트레스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예컨대 캘리포니아와 같은 개별 주 차원에서 열 스트레스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에는 영국노총(TUC) 차원에서 실내 사업장의 최고 허용온도 설정에 대한 요구가 있으나 아직까지 정부차원에서 뚜렷한 가시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독일의 경우에는 독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폭염 시 사업주의 구체적인 조치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업장기술지침의 형태로 실내 허용온도 및 각 단계별 대응조치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 살펴본, 폭염 등 고온으로 인한 일하는 사람의 건강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미국, 영국, 독일의 사례는 우리에게 보다 많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준다.

우선, 미국, 영국, 독일 이 세 나라의 사례에서 공히 지적되는 바와 같이, 폭염 등 고온에 노출되어 일하는 사람의 건강보호를 위해서는 안전보건집행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점이다. 규정이든 지침이든 어떠한 형태이든지 간에 고온질환 등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수립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사업장 단위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실현되지 않는다면 폭염 등으로 인한 질환 및 산재사고에 대응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한편 2020년부터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호가 도입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밖에 머물고 있

다. 그러나 폭염으로 인한 건강침해는 비단 근로자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기온 등 기후로 인한 건강침해는 일하는 사람 모두에 해당하는 문제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을 포함하는 일하는 사람 모두가 고온, 미세먼지 등 자연재난 또는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조치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끝으로, 독일의 경우 이미 2008년 연방정부 차원에서의 결의를 통해 기후변화가 노동을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및 대응책 마련 등이 추진되고 있다. 우리의 경우에도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일하는 사람의 건강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에 대해 어떠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우리에게는 이미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도 있다. 매년 봄 우리를 괴롭히는 미세먼지를 포함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범정부적 차원의 논의 및 대응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 KLI